

영등포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2.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04호로 2012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2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사무직렬) 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비율) 조정
(안 제3조제2항 별표2)

○ 일반직

- 7급 : 31% 이내 → 32% 이내 (증 1%)
- 8급 : 29% 이내 → 30% 이내 (증 1%)
- 9급 : 11% 이상 → 9% 이상 (감 2%)

나.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에서 일반직계를 1,028명
에서 1,058명으로, 6급 이하를 960명에서 990명으로,
기능직계를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 요건)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경력
경쟁임용 시험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2012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 인원 30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으로 30명을 상계 증원

· 일반직 정원 : 1,028명 → 1,058명 (증 30명)

· 기능직 정원 : 243명 → 213명 (감 30명)

-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서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조정

▷ 일반직 공무원

· 7급 : 31% 이내 → 32% 이내 (증 1%)

· 8급 : 29% 이내 → 30% 이내 (증 1%)

· 9급 : 11% 이상 → 9% 이상 (감 2%)

- 안 제4조 별표 3에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960명에서 990명으로 30명 증원되어 일반직계가 1,028명에서 1,058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능직계가 30명 감소되어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되었음

○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 7. 7일 필기시험과 8월 면접시험을 통하여 9월에 일반직으로 임용되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우리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경력경쟁임용시험 개요

□ 경력경쟁임용 규모

○ 경력경쟁임용 예정인원(잠정) : 30명(총정원 72명)

- 2011년 : 정원조정 및 시험문제 출제 등 사전준비 일정상 시험 미 실시

- 2012년 :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 20%(2011년 미 실시분)+ 사무직렬 기능직 총정원 20% (2012년분)+ 자연감소인원

□ 응시대상 : 일반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사서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 시험과목

○ 일반행정 6급, 7급

- 필수 : 행정학, 행정법

-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일반행정 8급, 9급 : 사회, 행정학개론

□ 시험방법

○ 1차 및 2차 필기시험 병합 실시 : 2012. 7. 7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3차 시험 면접시험 : 2012. 8. 8 ~ 8.10

-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위 내외의 대상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8. 20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 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조사·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